

의안번호	2203859
의 퇴 인	용혜인 의원
회 답 일	2024.11.12.
추 계 번호	24E3860

탄소세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탄소세를 신설함에 따라 재정수입은 2025년 50.9조원 등 5년간 총 278.7조원(연평균 55.7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

- 다만, 세법 개정에 따른 행태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제하였으며, 과세물품의 수요량 전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탄소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세율의 감면 등을 반영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다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탄소세

(단위: 조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온실가스발생물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	50.9	55.8	56.6	57.3	58.0	278.7	55.7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 (과세대상) 안 제6조 (과세표준) 안 제7조 (세율 및 세액의 계산)	○ (과세대상)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석유가스 등 13개 물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 (과세표준) 과세대상 수량 × 1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 ○ (세율) 1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8만원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조(과세대상) 안 제6조(과세표준) 안 제7조(세율 및 세액의 계산)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4년 중 통과되어 2025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세수효과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징수기준에 따라 추계
 - 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은 매월분의 탄소세를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탄소세입으로 계산된 금액 중 11개월분만 해당 연도에 징수되고, 마지막 1개월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징수
- 「탄소세법」의 제정에 따른 행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세수효과는 ‘해당 과세물품의 수요량 전망 × 과세물품 1단위당 이산화탄소상당량톤 × 연도별 세율’로 도출
 - 과세물품의 수요량 전망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중기 에너지 수요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함
 - 과세물품의 1단위당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센터가 발표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매년 동일한 것으로 가정
 - 과세물품의 수요량 전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탄소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가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과세물품의 수요량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중기 에너지 수요전망 및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전망

[표 3] 과세물품의 수요량 전망(2025~2029년)

(단위: 백만TOE)

호	유형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1	휘발유	10.46	10.53	10.66	10.78	10.91
2	경유	24.05	23.94	24.23	24.52	24.81
3	등유	1.75	1.66	1.68	1.70	1.72
4	중유	4.66	4.67	4.73	4.78	4.84
5	프로판	6.27	6.29	6.37	6.44	6.52
	부탄	4.77	4.79	4.85	4.91	4.96
6	부생유	2.80	2.85	2.88	2.92	2.95
7	나프타	61.43	61.85	62.59	63.34	64.10
8	아스팔트	1.98	2.02	2.04	2.07	2.09
9	항공유	6.29	6.42	6.50	6.58	6.65
10	천연가스 (액화 포함)	56.15	58.28	58.98	59.69	60.40
11	무연탄	5.79	5.86	0.00	0.00	0.00
	(국내탄)	0.36	0.34	5.93	6.00	6.07
	(수입탄)	5.43	5.51	0.34	0.35	0.35
12	유연탄(연료탄)	88.18	87.61	5.58	5.64	5.71
13	코크스(원료탄)	28.40	28.78	88.66	89.73	90.80
합 계		302.98	305.55	29.13	29.47	29.83

자료: KEEI 중기 에너지 수요전망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과세물품 수요량 전망을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변환) 과세물품의 수요량 전망에 1단위당 이산화탄소상당량톤($\text{tCO}_2\text{eq/TOE}$)를 곱하여 도출
- 과세물품의 수요량 전망에 해당 수치를 곱하여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

[표 4] 과세물품의 수요량 전망을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수치

(단위: 백만tCO₂eq)

호	유형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1	휘발유	29.15	29.34	29.70	30.05	30.41
2	경유	68.71	68.41	69.22	70.05	70.89
3	등유	4.96	4.72	4.76	4.82	4.88
4	중유	14.64	14.67	14.85	15.03	15.21
5	프로판	15.54	15.58	15.78	15.97	16.16
	부탄	12.20	12.24	12.40	12.55	12.70
6	부생유	7.96	8.12	8.20	8.30	8.40
7	나프타	41.54	41.82	42.33	42.83	43.35
8	아스팔트	6.15	6.27	6.35	6.43	6.50
9	항공유	17.76	18.12	18.34	18.56	18.79
10	천연가스 (액화 포함)	118.51	123.00	124.48	125.98	127.49
11	무연탄	25.69	26.00	26.31	26.63	26.95
	(국내탄)	1.61	1.54	1.54	1.56	1.58
	(수입탄)	24.08	24.46	24.73	25.02	25.33
12	유연탄(연료탄)	224.58	221.01	225.81	228.52	231.26
13	코크스(원료탄)	107.12	108.55	109.86	111.17	112.51
합 계		694.51	697.85	708.81	717.31	725.92

자료: KEEI 중기 에너지 수요전망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수효과 추계) 과세물품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함에 따라 2025년 50.9조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총 278.7조원(연평균 55.7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 과세물품 수요량 전망의 이산화탄소상당량톤에 세율을 곱하여 세수효과를 도출하되, 징수기준에 따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
- 다만, 세법 개정에 따른 행태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제하였으며, 과세물품의 수요량 전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탄소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세율의 감면 등을 반영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다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탄소세

(단위: 조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온실가스발생물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	50.9	55.8	56.6	57.3	58.0	278.7	55.7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1과
과장 직무대리	백수연
추계세제분석관	백수연
연락처	02-6788-4745
	sooyeon21@na.go.kr
